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(영업정지)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 년 8 월 25 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기간)	처분사유	처분근거
더랜드개발(주) (조정훈)	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333 , 301호(도당동, 부원빌딩)	건축공사업 (10-0724)	영업정지 5개월 (2026. 10. 1.~ 2027. 2. 28.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(자본금) 미달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3 조제 3 호